

## 참고 4

## 채용시험의 가산점수

구분	가점대상	가산점수	적용단계	비고 (증빙서류)
취업지원 대상자	1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체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9항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5% 또는 10%	각 전형단계	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	3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	3%	서류전형	장애인증명서 또는 취업보호기관의 확인서
정부권장 정책에 해당하는 경우	5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	3%	서류전형	수급자 증명서 (본인명의)
	6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	3%		차상위계층 확인서 (본인명의)
	7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(단, 공고시작일 기준 보호대상자 해당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)	3%		한부모가족증명서
	8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	3%		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	9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	3%		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	10.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	2%		인턴수료증 사본
	11.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	3%		
지역인재	12. 채용예정기관 소재*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시작일 기준 2년 이상 채용예정기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* 채용예정기관 소재는 '시·군'인 기초자치단체에 한하며, 소재지 한 곳을 지정하여 채용하는 경우만 적용	3%	서류전형	주민등록초본 (필요 시 졸업증명서)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13.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1급 취득자	3%	서류전형	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(성적통지서)
	14.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2급 취득자	2%		
	15.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3급 취득자	1%		
<p>○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 사항만을 적용한다.</p> <p>○ 10., 11. 청년인턴의 경우 공고시작일 기준 2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</p> <p>○ 1., 2.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「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(국가보훈처훈령)」을 적용하여 처리하며,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			